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쟁점

(중대산업재해 중심)

2022. 2.3

법안의 명칭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민주노총은 기업처벌 강화라는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명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함

법안의 시행

- 2022년 1월 27일 시행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이상 건설공사(본사기준)는 2024년 1월 적용



-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그 결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함
-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자체는 산안법 및 안전보건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가능함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종사자의 범위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2)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3) 다단계 하도급으로 내려간 각 단계에서 1) 2)의 관계에 있는 자

- 특수고용노동자도 적용대상 (직종, 전속성 무관)
- 다단계 하청노동자도 적용대상
- 장비임대차 계약은 도급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경영책임자의 범위

-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안전담당이사로 떠넘길 수 있는 여지 발생
- 산안법 14조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이행의무와 연동 해석 필요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 처벌 대상으로 포함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지침과 연동 해석 필요



5인 미만 사업장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를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 및 공공기관은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
- 정부지원 등 다른 조항은 적용
- 산안법으로 5인 미만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지만 양형의 문제

그러나

- 5인 미만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라도 원청(도급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실질적 지배, 관리, 운영 책임이 있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 계산
 - 수급인(하청)의 근로자 수는 합산되지 않음
 - 파견노동자는 근로자 수로 합산함
 - 사업장이 여러곳인 경우 소속 근로자 수를 합산함



중대산업재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전담조직의 설치

5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200위 건설기업은 3명 이상의 전담조직 구성

3.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조치. 위험성평가(연1회)는 점검으로 인정 (점검 후 필요조치를 해야 함)

4.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비용

5. 안전보건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것,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6. 전문인력 배치 (법정 기준)

7. 종사자 의견 수렴, 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점검 후 필요조치, 산보위 및 건설안전협의체 등 인정 (점검 후 필요조치 해야 함)

8. 매뉴얼 마련 및 이행여부 반기 1회 점검

작업중지,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조치 등

9.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과 절차 마련하면 반기 1회 점검

재해예방능력 및 평가기준과 절차, 안전보건관리비용 기준, 건설업 및 조선업의 공사기간 및 건조기간



사망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 병과할 수 있음

-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동일하게 적용
- 하한형 도입
- 산안법 대비 처벌 수준 상향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위반시 ½ 가중처벌 도입

부상과 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법인 처벌

- 사망 : 50억 이하의 벌금
- 부상과 질병 : 10억 이하의 벌금

-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동일하게 적용
- 매출액 대비 벌금 도입하지 않음
- 벌금은 하한 없음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하
- 경영책임자가 처벌된 기업에 부과

-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



중대산업재해

- 경찰 :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위반 여부 수사
-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 재해원인조사)
- 검찰 : 총괄 지휘

• 현재 경찰에서는 광역수사대에 산재사망 전담반 운영중

중대시민재해

- 경찰 :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위반 여부 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 검찰 : 총괄 지휘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시에만 처벌

적용대상

부상, 질병도 규정할 근거 마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산안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 (전속성, 직종 무관)사내하청의 원청
사외하청의 원청의 경우 22개 위험작업에 한정

원청범위

사내하청 및 사외하청의 원청
특수고용노동자의 원청38조 안전조치
39조 보건조치
63조 원청의 의무처벌대상
의
의무조항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행정기관 시정조치 이행사업주 (법인은 관리자 처벌로 귀결)
사업장 단위 처벌이기 때문에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최대 처벌범위가 되는 한계

처벌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경영책임자
본사의 경영책임자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장사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처벌수준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이하)
부상, 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 이하)
가중처벌/징벌적손배 5배 이내

특수고용노동자

- 전속성, 직종과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 원청(본사)에 적용

Ex.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택배, 설치기사 등

사내하청/사외하청의 원청

- 모든 사내하청의 원청
- 사외하청은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원청

실질적 책임이란? (노동부 설명자료)

- 사업주가 해당장소,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 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사업장 뿐 아니라 사업장 밖이라도 사업주가 지정,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는 모두 포함됨
-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계약 형식상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위험원을 직접 지배관리하는 경우 등 실질적인 도급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적용됨

시행령상 사망, 질병의 기준

사망은 사고만이 아니라 과로사, 직업병 사망,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 포괄(인과관계 규명의 문제)

질병의 범위는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24개 질병으로 정함

➤ 만성적 화학물질노출,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 암 제외

산재승인 여부가 기준은 아님 (산재보상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의 질병도 포함)

〈표 1〉 시행령 〈별표1〉 요약

1. 염화비닐, 유기주석, 메틸브로마드, 일산화탄소의 급성중독	13. 기타 화학적 인자_산안법 별표2(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14종) 및 별표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09종)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노출된 급성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 등의 급성중독	14.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된 기도과민증후군
3. 수은 또는 그 화합물의 급성중독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4.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의 급성중독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노출 독성간염
5. 벤젠에 노출되어 급성중독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C형 간염·매독 등
6. 톨루엔, 크실렌, 노말렉산 등 유기화합물의 급성중독	18. 습한 곳에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된 급성중독	19. 동물/사체, 짐승털/가죽, 냉마, 고물 발생 탄저/브루셀라증
8. 황화수소에 노출된 급성중독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급성중독	21. 고기압/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잠수병 등
10. 불화수소, 불산에 노출된 급성중독	22.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11. 인(백린, 황린)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급성중독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1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급성 질병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발생한 열사병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음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산안법 상 500인 이상 기업과 1,000위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산재예방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수행하는 자가 경영책임자로 해석 가능
- 직위의 형식적인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
-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권한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복수의 경영책임자 처벌 가능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안전보건담당 임원, 생산담당 대표 등
- 여러 사업장(공장, 건설현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단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만을 책임지는 사람은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음

노동부 해석

-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보건담당 임원이 있다는 이유로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의 책임이 면책 되는 것은 아님
-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됨



노동조합의 준비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에 적극적 개입

본사, 중앙 차원의 노사협의구조 추진

시민재해 예방계획에 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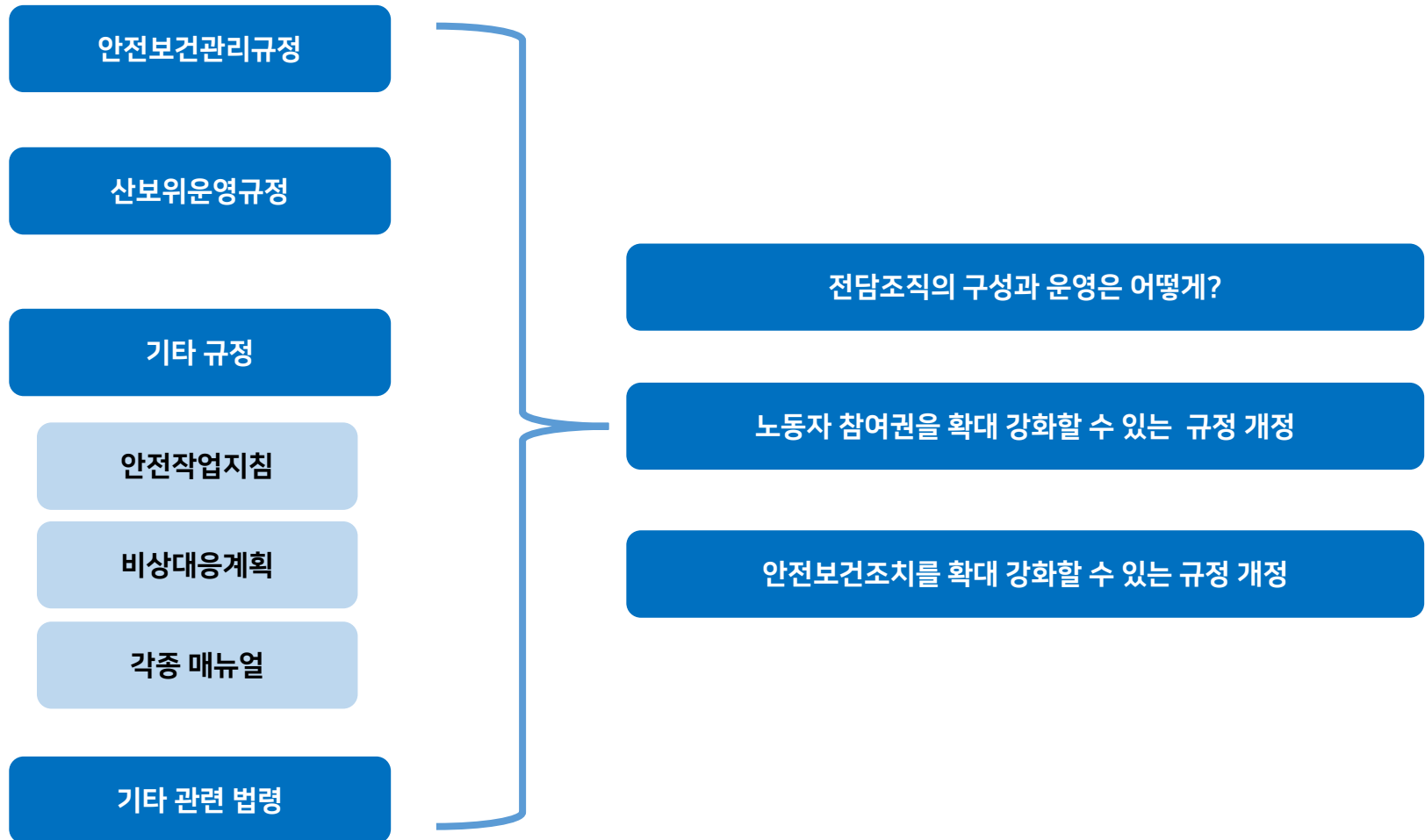
-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은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므로 산보위 개최, 심의의결을 요구
- 산안법 상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이상의 조치들(과로방지, 인력충원, 설비개선 등)이 포함되도록 현장요구안 마련
- 본사를 대상으로 산보위 요구 혹은 사업장 간 공동대응
- 시민재해 예방 관련 요구안 마련

비정규직(하청, 특고) 노동자의 권리 확대

- 계약조건, 안전관리 인력, 재해예방 조치 등 포괄적인 재해예방 대책 요구
- 하청업체 및 특고 노동자에게 사고책임을 전가하는 계약관행 조사와 삭제 요구
- 원청 노동조합의 공동투쟁이 필요

노동자의 참여권 확대

- 위험성평가 등 관련 제도시행에 적극적인 개입
- 산재예방계획에 노안활동 확대, 활동시간 보장을 위한 계획 포함시키도록 요구
- 공공기관 및 공공위탁사업은 관련 규정 최대한 활용
- 현행 안전보건관리규정, 매뉴얼, 작업지침 전면 검토





전담조직의 구성사례

- LG전자 : 주요리스크관리조직(CRO) 신설, 안전환경담당 지정, 안전환경보건방침 제정
- SK하이닉스 : 안전개발제조총괄조직 신설 (곽노정 사장)
- 현대오일뱅크 :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신설 (고영규 부사장)
- GS칼텍스 : 이두희 부사장(CSO)를 대표이사로 승진

법의 취지 : 이름만 전담조직이 아닌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운영하라

점검사항

-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
-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자'가 아닌 별도의 안전업무 총괄, 관리 조직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의무사항은 아님)
- 안전관리자에게 전체사업장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본래의 직무(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산안법 위반
-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해야하며, 환경안전팀 등으로 묶여있는 경우라도 인력과 조직을 분리해야 함
- 전담조직의 주요 업무는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를 받아야 함

안전보건조치 참여 확대

- 회사는 안전보건조치에 있어 노동자 의견 반영할 의무 > 참여권 강화로 활용
- 현장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근골유해요인조사, 측정, 검진 등 안전보건조치에 있어 노동조합의 참여권한을 명문화
- 이를 위한 활동시간과 권한의 보장

작업중지권 명문화

- 회사는 위험상황시 대응매뉴얼 등 정비할 의무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명문화 :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주체, 불이익 금지 등 명시
- 노동자대표, 노안담당자, 명산감 등이 권한을 갖는 방안도 모색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을 반기 1회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개선조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안전보건관계법령 상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점검

- 산안법 외 법령에 명시된 안전보건조치도 이행할 의무 발생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화학물질안전 관련 법령들, 여객운수 관련 법령 등)
-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인력의 확보 의무
(과로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확보, 안전작업을 위한 2인 1조 인력 확보 등)

현장노안활동 강화를 통한 일상적 감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확보의무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개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
- 노안부서, 노안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강화

경영책임자, 본사, 원청, 발주처의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

- 안전보건 문제에 있어 진짜 책임자의 책임을 요구하고 그들을 테이블로 끌어내는 노력을 지속
- 투쟁의 성과는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처벌법과 시행령의 개정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을 것
- 사고원인, 사업주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투쟁
- 처벌법과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화를 통한 법과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원인규명의 핵심은 노동자 참여

처벌의 수준을 결정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제대로 된 사고조사**

- 현재의 사고조사는 근본적,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지적이 없음
-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는 사업주,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처벌법
- 노동자가 참여하는 재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사고조사 제도의 개혁도 필요함